

##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

제정 2016년 9월 29일 조례 제1512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영업장소와 첨부서류)**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(이하 “휴게음식점영업 등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연시설, 전시시설, 도서관시설 및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
  - 가.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·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·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(이하 이 호에서 “시설운영자”라 한다)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·신고증 등 서류
  - 나.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: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
**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**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.

**제4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식품위생법」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